

국내 최초로 반도체업체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반도체업체에 대한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가 2009년 6월~9월까지 추진된다.

이번 반도체업체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는 2008년에 실시한 “반도체업체 역학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림프조혈기계 질환 발생자가 많았던 3개 업체(삼성전자, 하이닉스, 앤코테크놀로지)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작업과정상에 잠재되어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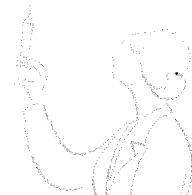
2008년 역학조사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를 확인하였으나, 추적기간이 짧고 정확한 직무·공정분류의 한계 등으로 중장기적인 심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구축된 코호트를 축적·보완하여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환자-대조군 연구 등 분석역학적 심층연구를 2009년~2019년까지 추진키로 하였다.

하지만,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연구가 완료되기 전일지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반도체업체는 화학물질취급공정·방사선취급공정 등 주요 유해요인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보건 임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등 3개업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산업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아르신·방사선에 대한 정밀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일에는 반도체업체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를 촉구하였다.

위험성평가는 노사자율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이지만, 반도체제조공정은 복잡한 공정이 많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반도체업체 산업보건 위험성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토록 하였다.



자문단은 반도체공정에 있을지 모르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보건관리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자문을 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단장으로 구성된 자문단에는 국내 산업보건 분야(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독성·산업환경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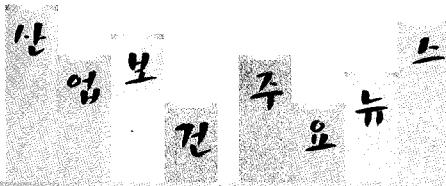
이와 관련 6월 9일(화) 서울대에서 자문단, 사업장 임원과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평가 개시회의”를 개최하여 자문계획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과 사업장 경영진은 사업장 보건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자문단과 협의하여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진행되는 “반도체사업장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에서 사업장은 노·사 합동의 사업장 보건관리추진팀을 구성하여 자문단의 지도에 따라 위험성 평가활동을 전개한다.

자문단은 산업독성, 노출평가, 환기설비, 교육, 보건관리 등 5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위험성평가 자문을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노동부에서는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자문단은 앞으로도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자율적으로 보건관리 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사업장 보건관리 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추진

- 카본블랙 및 고무흄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추진

노동부는 2007년과 2008년 실시한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타이어제조 사업장에서 고열·고무흄 등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어제조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강화 및 후속 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보건관리 개선방안

우선 근로자 100인 이상 타이어제조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2009년 6월 중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 관리 사항을 교육하고, 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역학조사 결과 총분진 농도와 고무흄 농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총분진 농도를 영국의 고무흄 노출기준인 $0.6 \text{ mg}/\text{m}^3$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지도
- 타이어 제조공정은 고열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 교대 근무 실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자가 아침 근무를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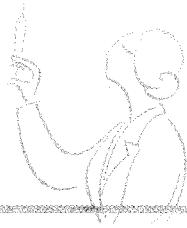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작업환경개선 및 보건관리계획을 2009년 7월까지 수립하여 이행토록 지도하고 자체 개선상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주요 후속 연구 내용

또한 건강영향에 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본블랙 및 고무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0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독성 연구를 통해 유해성을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기준 설정 여부 등 관리수준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카본블랙 초미세입자에 의한 세포독성(DNA 손상) 및 발암성 평가(2010)
- 실험동물을 이용한 카본블랙 초미세입자에 의한 폐독성 및 염증반응 기전 연구(2010)
- 실험동물을 이용한 카본블랙 초미세입자의 심혈관계 영향 평가(2010-2011) 등

이와 관련, 노동부는 2009년 6월 17일-18일간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제조업체 대상으로 본부 및 지방청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동부,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

- 달라지는 석면제도 집중 교육·홍보와 함께 일제 점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8월 7일부터 시행될 석면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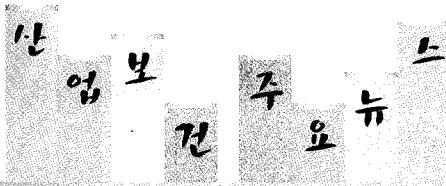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cm³)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하는 노동부는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고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제거시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석면 함유 여부 사전 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년~30년)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

- 2011년부터 상시 근로자 20~29명 사업장(약 3만개)도 산재사고 없으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
-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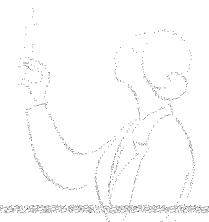
6월 30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령에서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에는 약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므로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 · 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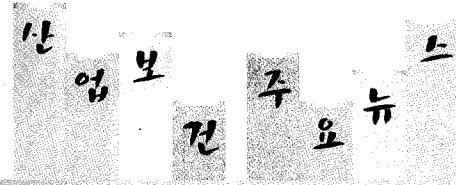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85%를 초과하면 할증)

이번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중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역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용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부터 합의문이 이송되는 대로 공동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노동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시행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시행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체,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 섭취,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하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종 야외활동 금지,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대체근로 실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함

한편,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 소금과 음료수 공급하고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건강 장해 예방하며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함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 단체를 통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 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지도하고,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폭염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도심의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지므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 중지,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등 폭염 안전 관리대책을 적극 실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